

소액사건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소액사건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소액사건의 범위는 1998. 3. 1. 이래 현재까지 “제소한 때의 소송 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유지되어 왔음
- 그러나 지난 16년간 우리나라의 물가와 국민소득 수준 등이 크게 상승하였고, 그에 따라 민사사건의 평균 소송목적의 값도 크게 상승하였으며, 나아가 한정된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배분을 통하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소액 민사사건에 관한 특례를 정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소액사건의 범위를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본문)

3. 소액사건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소액사건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소액사건심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2,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건으로

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 ----- ----- 3,000만원 ----- ----- ----- ----- ----- ----- -----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1., 2. (현행과 같음)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416